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 Policy and Law Report _Vol.175

##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2.22.~2.28.) -

*February 28, 2023*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 | 내용 | 일시 |
|---|---|---|
| 산업통상자원부 |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발표 -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br><br>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하며 2023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으로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함<br><br>주요 내용으로는<br>①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및 제도개선)**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고용 및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 지원<br>– 공장 신·증설이 없는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예측가능성 제고<br>– 외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입지지원을 위하여 외투지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첨단투자지구 신규 지정 및 인센티브 확충 추진<br>–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사업 및 외투기업 연구 개발(R&D) 투자 촉진 지원방안 마련 추진 등 외투기업의 고용과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 지원<br>② **(전략적 유치활동)**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100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유치<br>– 국내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 및 지역별 전략산업 유치 지원 등 유치활동의 효과성 제고<br>– 수출통계, 경영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 투자유치활동 효율화<br>–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산업경쟁력 및 투자 강점을 적극 홍보하여 잠재투자가 유입 확대 유도<br>③ **(투자환경 개선)** 외투기업 간담회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br>– 정부는 지난해 간담회(13회), 설문조사(5,600개사)를 실시하여 외투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0개 규제 개선방안 既 발표 ('22.12)<br>–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 외국인투자 종합가이드 발간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법령 영문화 및 지자체 입법정보 제공 등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IK(투자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원스톱서비스)·옴부즈만(고충처리) 등 외국인투자 유치·지원기관의 역량 제고와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 | 2023-02-23 |

| 부처 | 내용 | 일시 |
|---|---|---|
| | ④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노동·인증 등 규제 완화와 현금·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등 건의 | |
| | •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br><br>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를 "全부처의 산업부화"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함<br><br>금번 수출확대 전략에는 ① 부처별 '23년도 수출목표 설정, ②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③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④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됨<br><br>주요 내용으로는<br>**①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점검·협업체계 구축**<br>–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br><br>**< 범부처 수출총대응 체계 >**<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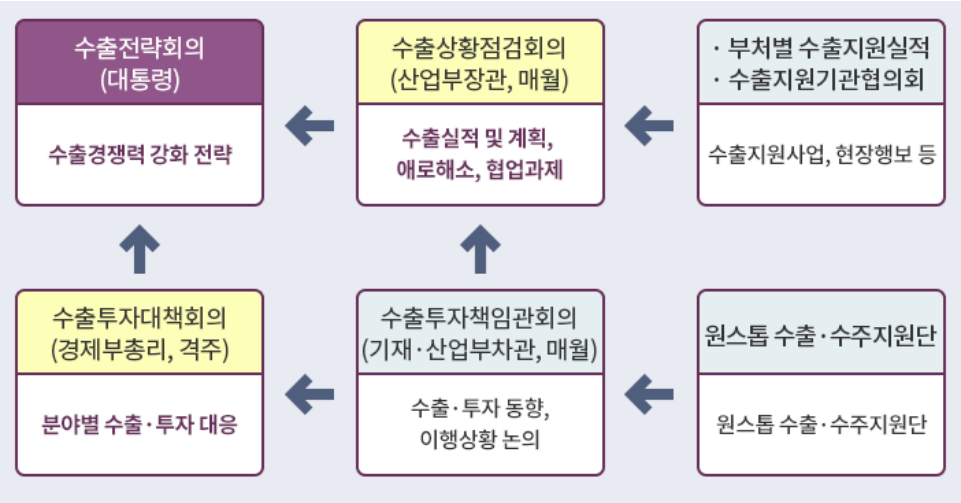 <br><br>**② 지능형 농장, 교육정보기술,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등을 新수출동력으로 육성**<br>**③ 18개 수출 유관 부처, 2023년 수출목표로 6,850억 불 제시**<br>**④ 투명·차량용·착용가능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br>**⑤ 인공지능·전력·차량용 등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 '31년까지 2.9조 원 투자** | 2023-02-23 |

<table>
<tr><th>부처</th><th>내용</th><th>일시</th></tr>
<tr><td></td><td>

• **건축규제정비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함

*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 ('22.7.6 출범)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 · 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최근 신산업 발전 · 디지털 전환 ·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안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하여 높이 기준 정비
-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정비
-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축규제 정비

**② 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인증 등 절차 개선
- 규제 철폐를 위한 모니터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촉진
- 건축물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물대장 정비

**< 추진 일정 >**

<table>
<tr><th>규제개혁 과제</th><th>법령정비계획</th></tr>
<tr><td colspan="2">층고상향 등 수요를 반영한 높이 기준 정비</td></tr>
<tr><td>층간소음 기준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완화</td><td>• 건축법 시행령 개정<br>('23.5월 공포, 23.11월 시행)</td></tr>
<tr><td>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높이 기준 유연화</td><td>• 건축법 개정('23)</td></tr>
<tr><td>건물 상부 풍력 발전설비 설치 허용</td><td>• 건축법 시행령 개정('23.上 공포·시행)</td></tr>
<tr><td colspan="2">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용도 정비</td></tr>
<tr><td>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td><td>• 건축법 시행령 개정('23.2 공포·시행)<br>•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br>('23.下 공포·시행)</td></tr>
</table>

</td><td>2023-<br>02-23</td></tr>
</table>

| 부처 | 내용 | 일시 |
|---|---|---|
| | | |

| | |
|---|---|
| 근린생활시설 하위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 • 물류시설법 개정('23)<br>• 물류창고업 지침 개정('23)<br>• 건축법 시행령 개정('23) |
| 소규모 동물병원 용도 분류 재편 | • 건축법 시행령 개정('23.上) |
| **저출산 고령화 대비 규제 정비** | |
|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 • 건축법 시행령 개정('23.上) |
|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완화 | • 건축법 시행령('23.上) |
|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 오피스텔 건축기준('23.上) |
|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한 건축심의 · 인증 등 절차 개선** | |
| 건축 · 경관위원회 심의 통합 운영 | •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23.下)<br>•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23.2) |
| 투명한 심의절차를 위한 심의의견 공개 편의성 개선 | • 녹색건축법 개정('23.下)<br>•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23.下) |
|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통합 | • 녹색건축법 개정('23.下)<br>•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23.下) |
|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 | • 건축법 개정('23.上) |
| **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 |
| 건축분야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 •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23.下) |
|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기준 정비 |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23.上) |
| **건축물 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정비** | |
| 정보관리를 위한 기재항목 개편 |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23.上)<br>• 건축물대장규칙 개정('23.上) |
|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자 확대 | • 건축법대장규칙 개정('23.上) |
| 등기촉탁 신청기한 완화 | • 건축법대장규칙 개정('23.上) |

##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부처 | 법률안 | 공포일자 |
|---|---|---|
| 기획<br>재정부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23.2.23. 시행)**<br><br>「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br><br>**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냉동고등어 '20,000톤'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별표 8 신설 등)** | 2023-<br>02-23 |
| 산업통상<br>자원부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2.28. 시행)<br><br>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종전에는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되,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하도록 하던 것을,<br><br>앞으로는 **모든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하되,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3항 삭제)**<br><br>*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 2023-<br>02-28 |
| 해양<br>수산부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2.28. 시행)**<br><br>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운영, 소금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5조제3항 각 호**) | 2023-<br>02-24 |

##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기획<br>재정부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br>「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전환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br><br>주요 내용으로는<br><br>**①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조정 (안 제6조)**<br>–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br><br>**②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안 제10조의4)**<br>–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의 회수 불가능 및 당사자 간 채권금액 감면 확인 기관에 무역보험 공사와 채권추심업무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을 추가함<br><br>**③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보고 합리화 (안 제19조의2제1항)**<br>–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여부를 대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br><br>**④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되는 의료기기 등의 범위 확대 (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br>– 산부인과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함<br><br>**⑤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의 계산 시 가감항목 규정 (안 제39조의3 신설)**<br>–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포괄범위 변경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전환이익을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을 규정함<br><br>**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관련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범위 규정 (안 제68조의3 제1항)**<br>–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로 거주자증명서만 제출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br><br>※ 의견 제시기간<br>:2023/2/23(목)~3/9(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2023-<br>02-23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br>국세청이 과세자료로써 구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추가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경기간을 연장하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및 사전 경기대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br><br>주요 내용으로는<br><br>**①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안 제9조의3)**<br>– 최근 예금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br><br>**②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신설 (안 제43조제2항)**<br>–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위원회·국제경기연맹 등이 수입하는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주관 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써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것,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br><br>**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 정비 (안 제61조)**<br>– 대전 · 속초 · 동해 세관장의 과세전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을 서울세관장으로 조정함<br><br>**④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추가 및 납부 기한 연장 (안 제68조의2제3항 및 제4항)**<br>–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규정함<br><br>**⑤ '장치기간 경과물품' 용어 정비 (안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br>–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에서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도 정비함<br><br>**⑥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안 제77조의4제1항 및 제3항)**<br>– 무역원활화 관련 사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의 일반직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br><br>**⑦ '통관고유부호' 용어 정비 (안 제79조의2 제2항)**<br>– 탁송품의 특별통관시 통관목록 기재사항인 '통관고유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용어를 정비함 | 2023-02-23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⑧ 과세자료 제출 서식 추가 (안 제79조의4제1항, 별지 제67호서식)**<br>–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을 위해 별지 제67호 서식(「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1호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을 추가함<br>※ 의견 제시기간<br>:2023/2/23(목)~3/9(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로 제출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br>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시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 중 일부 지방공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br><br>주요 내용으로는<br>**① 부동산 임대시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 명칭 변경 (안 제6조)**<br>– 에스에이치(SH)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각각 변경함<br>**②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안 제47조)**<br>–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2퍼센트에서 연 2.9퍼센트로 상향 조정함<br>※ 의견 제시기간<br>:2023/2/23(목)~3/9(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 2023-02-23 |
| |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br>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 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 2023-02-23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 의견 제시기간<br>:2023/2/23(목)~3/9(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 |
| 환경부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br>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 지정취소 및 공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br><br>주요 내용으로는<br>**① 인체노출안전기준을 도입 (안 제15조)**<br>–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의 일일허용노출량에서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용어 변경<br>**②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표5)**<br>–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평가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br>**③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안 제21조의2제3항)**<br>–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함<br>**④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안 제21조의3제1항, 안 별표 6)**<br>–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br>**⑤ 업무의 위임 (안 제24조의제1항 신설)**<br>–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및 공고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br><br>※ 의견 제시기간<br>:2023/2/17(금)~3/29(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 | 2023-02-24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br>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도록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22.6.10. 공포, 2023.6.11. 시행)됨<br><br>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절차,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br><br>주요 내용으로는<br>**① 조문 정비 (안 제10조, 안 제11조의2, 안 제14조)**<br>–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조문 삭제 및 조항 변경<br>**②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 제14조의2, 안 별표6의2)**<br>–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세부기준과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br>–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항목, 기준 절차 등을 마련<br>**③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안 별표4)**<br>–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배출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세부 행정처분기준을 신설<br>**④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서식**<br>–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br>※ 의견 제시기간<br>:2023/2/24(금)~4/5(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 | 2023-02-24 |
| 산업통상자원부 | •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br>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에너지이용권 발급 가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및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하고자 함<br><br>주요 내용으로는 | 2023-02-28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①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3조의2제2호라목)**<br>–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자의 경우도 공동주택 등 본인 거주지의 기본적인 에너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장기 입원 중인 취약 계층에게도 에너지비용 지원<br>**②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안 제13조의3제1호나목)**<br>– 에너지이용권은 세대 단위로 발급하고 있어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세대원 특성을 확인을 위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br>**③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 (안 제13조의11)**<br>–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br>※ 의견 제시기간<br>:2023/2/28(화)~3/3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로 제출 | |
| 고용<br>노동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br>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br><br>이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 및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br>주요 내용으로는<br>**①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 (안 제19조의2, 별표1의2)**<br>–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br>**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 (안 제83조의5)**<br>–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로 포함하고자 함<br>**③ 노무제공자의 보수 (안 제83조의6)**<br>–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로 정함 | 2023-<br>02-28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④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안 제83조의7)**<br>–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정함<br>**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안 제83조의9)**<br>–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br>**⑥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안 제83조의10)**<br>–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br>**⑦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안 제83조의11)**<br>–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br>※ 의견 제시기간<br>:2023/2/28(화)~4/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 | |
| 식품<br>의약품<br>안전처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br>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간호학과 졸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경력 요건을 각각 삭제**하는 한편, 원활한 교육 관리를 위해 **영업등록 · 신고 대장에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자격 구분 등 기재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br><br>이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 및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br>주요 내용으로는<br>**①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 등록 · 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8조의2 및 별지 제3호 서식)**<br>–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화장품제조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br>–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책임판매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자격 구분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 서식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br>–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함 | 2023-<br>02-28 |

| 소관부처 | 법률안 | 예고일자 |
|---|---|---|
| | **②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안 제8조)**<br>–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대학 및 전문대학 각각의 관련 학과에 간호학과를 포함함<br>–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1년 이상)을 삭제함<br>**③ 행정처분 기준시점 및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 (안 별표 7)**<br>–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처분의 경우, 무거운 처분 이외에 나머지 각각에 대해 기간을 산정하도록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br>– 행정처분 시의 기준날짜를 '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함<br>※ 의견 제시기간<br>:2023/2/28(화)~4/1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로 제출 | |

##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정무 위원회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br><br>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의 운영로 하여금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치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br>한편, 현행법은 임시중지명령 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br><br>그런데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재화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에 배송 · 결제 취소 · 환급 등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이버몰을 폐쇄한 후 상호만 교체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사기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br><br>이에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신설, 제32조의2제1항)** | 2023-02-23 |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3인)」**<br><br>현행법은 계좌정보의 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함<br><br>그런데 이용자가 의식불명이거나 고령 · 중증 환자인 경우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음<br><br>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병원비의 범위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등 예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금융회사 | 2023-02-23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마다 내부 규정을 달리 시행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br><br>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정보를 사용 · 관리하여 출금 또는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br><br>이에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2인)」**<br><br>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br><br>그런데,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함)의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br><br>이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6 신설 등)** | 2023-02-23 |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br><br>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하여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않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br><br>그러나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크패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23-02-27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이에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다크패턴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16조제4항 및 제72조제1호 신설)** | |
|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br><br>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하였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br><br>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9 신설 등)** | 2023-02-22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6인)」**<br><br>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br><br>그런데 현행 규정상 규율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br><br>이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 도용 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49조 및 제71조제1항제11호)** | 2023-02-22 |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br><br>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2023-02-23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br><br>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 제30조제5호,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 |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4인)」**<br><br>최근 오피스텔 · 원룸 ·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단체계약이 증가하고 있음<br><br>이로 인해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됨과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br><br>이에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2023-02-27 |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br><br>현행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단말장치의 분실 · 도난을 신고하면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하고, 이후 신고자가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분실 · 도난 신고를 해지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br><br>그런데 통신단말장치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한 이후 분실 · 도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신단말장치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아니므로 분실 · 도난 해지 권한이 없어 통신단말장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br><br>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 통신단말장치의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된 자의 경우에는 분실 · 도난 신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2023-02-27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0조의2)**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철규의원 등 25인)」**<br><br>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이상기후는 2023년 현재 전 세계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뭄 · 폭우 · 고온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음<br><br>이미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br><br>정부는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2017년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기술전망 보고서에 제시된 2°C 시나리오(2DS)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 기술(CCS)이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 감축에 14%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br><br>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 · 프랑스 · 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 · 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br><br>주요 내용으로는<br>**①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br>**② 포집 · 수송 · 저장 활용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을 정의함 (안 제2조)**<br>**③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함 (안 제4조)** | 2023-02-22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④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br>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7조 및 제8조)<br>⑥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br>⑦ 이산화탄소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br>⑧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br>⑨ 저장사업자는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약관을 작성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저장소 및 관계시설 운영시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⑩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 · 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 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br>⑪ 이산화탄소의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br>⑫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 · 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안 제47조)<br>⑬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안 제48조 및 제49조) |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0인)」**<br><br>기술신탁관리제도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미활용 기술자산 등을 신탁받아 설정 · 보호 · 이전 · 관리 및 사업화함으로써 기술지식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임<br><br>기술신탁관리업은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수행할 수 있으나, 기술신탁관리업으로 허가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 5곳은 기술신탁관리가 주력 업무가 아니고 전문역량도 부족해 5년 이상 실적이 없으며, 금융투자업자는 기술신탁의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br><br>공공연구기관이 권리를 포기되는 기술자산과 자투리 기술의 패키지 활용 등 기술신탁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임. 관련 민간기업의 80% 이상이 기술신탁관리업 수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은 기술신탁관리기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인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기술신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기술신탁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음<br><br>또한, 이 법에 따라 민간기업(193곳, 중복)이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등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기술신탁을 할 수 없어 기술지식 생태계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br><br>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 · 위탁받아 기술신탁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술신탁관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가 있음<br><br>이에 **자본금, 전문인력, 기술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에게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을 기술신탁 지원업무에 한정하려고 하는 것임 (안 제15조의2 및 제35조의2)**<br><br>더불어 **기술신탁관리업과 관련한 허가 자진 반납, 폐업, 2년간 무실적, 사후 지정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의7)** | 2023-02-27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2인)」**<br><br>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함<br><br>그러나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의 입지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일성있는 관리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br><br>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129개)가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 그 범위가 최소 100미터부터 최대 1000미터까지 다양함. 일부 지역은 조례에 따른 규제 지역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협소해짐<br><br>이에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7조의3 신설)** | 2023-02-27 |
| |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br><br>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br><br>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br><br>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2023-02-28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제10조의3 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br><br>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과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의 수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해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반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등에 담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판매요금과 감면 등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br><br>그런데 최근 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단가가 도시가스(LNG)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br><br>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고, 각각의 사업자가 요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신설)** | 2023-02-28 |
| 환경노동위원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br><br>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br><br>그런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나 대표자 등 임원 선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2023-02-22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또한 현행법 상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의무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 및 그 개표 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투표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br><br>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11조 등)** |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br><br>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 ·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br><br>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br><br>그런데, 소각장의 경우 배출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처벌 내역이 공공 소각장보다 민간 소각장이 4배 이상 많고 이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등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감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br><br>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 ·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 2023-02-22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br><br>1회용컵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된 1회용컵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음<br><br>그런데 지난해 6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일을 12월로 무단 연기한 데 이어, 12월에는 다시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 등 2개 지역으로 축소하며 정상적인 제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 | 2023-02-22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제도 운영체계의 핵심이었던 가맹본부의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핵심 성공요인으로 강조되었던 소비자가 직접 거래한 판매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반납 · 회수체계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br><br>한편, 현행법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커피, 제과 등 특정 업종의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1회용컵 사용량이나 매출액 등 책임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장 수의 단순 증감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br><br>이에 **업종과 관계없이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 (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제를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 2023-02-22 |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br><br>현행법은 수질 · 대기 ·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 · 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였고, 통합허가를 받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등 각 개별법에 따른 신고 · 승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됨<br><br>이러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배출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그런데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 · 감독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조직 · 인력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지도 ·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br><br>특히, 단순히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넘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조작이나 허위보고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수적임.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을 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범죄의 경우 더욱 필요성이 클 것임<br><br>이에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의 경우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 · 적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 2023-02-23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br><br>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검증하고자 안전성 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br>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향초 등 일부 제품은 연소 등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호흡기로 유해물질이 흡입되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제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의 검출만으로는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br><br>이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제2호의2,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2023-02-24 |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2인)」**<br><br>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출고 이후 운행 시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하여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됨<br><br>그런데 배출가스 인증 방식은 자동차를 시험구동하여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차대동력계 방식이 기본이 됨. 그러나 중량이 큰 대형차량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어려워 엔진을 분리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엔진동력계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됨<br><br>이에 최근 수입 캠핑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 부품 일부를 제거하고 무게를 최소화하여 본래 중량이었다면 따라야 했을 기준인 엔진동력계 방식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대동력계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를 판매하는 편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br><br>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제원에 관한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내용을 매수인에게 증빙하도록 함**<br><br>또한, **자동차제작자가 제원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다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안 제56조의2 신설 등)** | 2023-02-28 |

| 소관위 | 법률안 | 제안 일자 |
|---|---|---|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br><br>최근 자동차의 성능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 제품을 탑재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br><br>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br><br>그런데 자동차제작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에는 자동차 급발진 대처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의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고 일부 수입차의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한 한글 설명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br><br>이에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자료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1항)** | 2023-02-22 |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 기관 | 주요 일정 | | 비고 |
|---|---|---|---|
| 본회의 | 2/27(월)<br>14:30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br>**- 안건 처리** | |
| 상임위 | 아래 【별첨1】 참조 | | |
| 국회도서관 | 2/27(월)<br>15:00 | 최신 기술 이해 제고를 위한 'ChatGPT'관련 강연 개최<br>- 'ChatGPT'로 촉발된 Generative AI의 이해 | 국가전략<br>정보센터 |
| | 3/2(목) | 「Data & Law」 1호 발간<br>- 데이터로 보는 국회의원 선거 | |
| 예산정책처 | 3/3(금)<br>10:30 | 「제19회 NABO 포럼」 개최<br>- 출연(연)의 미래, KIST의 두려움 없는 도전 | 의정관<br>105호 |
| 입법조사처 | 2/27(월) | 「이슈와 논점」 발간<br>- 주취자(酒醉者)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 |
| 미래연구원 | 2/27(월)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 발간<br>-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br>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 |

## [별첨1] 제403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 위원회 | 일시 | 구분 | 내용 |
|---|---|---|---|
| 정무위 | 2/27(월) 10:00 | 법안심사1소위 | - 금융위 등 소관 법률안 심사 |
| 교육위 | 2/27(월) 11:00 | 전체회의 | - 법안 심사 |
| 정보위 | 2/27(월) 10:00 | 전체회의 | - 경찰청 등 소관 업무보고 |
| | 2/28(화) 10:00 | 전체회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업무보고 |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일자 | 제목 | 주최 | 장소 |
|---|---|---|---|
| 2/27(월) 14:00 |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 어기구 의원실 | 의원회관 2세미나실 |
| 2/28(화) 09:00 | 한-파나마 경제 기회창출 세미나 | 최승재 의원실 | 의원회관 2세미나실 |
| 2/28(화) 10:00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 최재형 의원실 | 의원회관 1소회의실 |
| 2/28(화) 10:00 |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 | 소병훈·이학영 의원실 | 의원회관 8간담회실 |
| 2/28(화) 14:00 | 신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행정서비스 개혁 방안 공동 토론회 | 이달곤·강기윤·김영선·정점식 의원실 | 의원회관 1세미나실 |
| 2/28(화) 15:30 | 한인 스타트업 기업에 답을 묻다 ! | 강민국 의원실 | 의원회관 2소회의실 |
| 3/2(목) 10:00 | 호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발전제약 최소화 | 한무경 의원실, 전기신문 | 의원회관 1세미나실 |
| 3/2(목) 14:00 |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김상희 의원실 | 의원회관 306호 |
| 3/2(목) 14:00 | 국회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 | 안호영·위성곤·신정훈 의원실 | 의원회관 1소회의실 |
| 3/2(목) 14:00 | 해운-조선-금융 상생 국회정책세미나 | 최형두 의원실 | 의원회관 2소회의실 |
| 3/3(금) 10:00 | 방사능 공포괴담의 진실과 과제 | 한무경 의원실 | 의원회관 2소회의실 |
| 3/6(월) 10:00 |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 박용진·박성준·소병철·양정숙 의원실 등 | 의원회관 2세미나실 |
| 3/6(월) 13:30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 ·하청 안전 상생 방안 | 박대수 의원실, 산업안전상생재단 | 의원회관 1세미나실 |
| 3/7(화) 13:30 |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 서영석·정춘숙·강훈식·최영희 의원실 등 | 의원회관 9간담회실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4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소속기관>

| 기관 | 주요 일정 | | 비고 |
|---|---|---|---|
| 국회도서관 | 2/20(월) | 국회도서관 웹진 제58호 발간 | |
| | 2/21(화)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 발간<br>-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 | |
| | 2/23(목) | 「현안, 외국에선?」 제54호 발간<br>-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 | |
| 예산정책처 | 2/20(월) | 「NABO 경제동향」 2월호 발간<br>- 2022년 수출입 특징 및 평가 | |
| | 2/23(목) | 2023년 「예산춘추」 첫 번째(Vol.69) 발간 | |
| 미래연구원 | 2/20(월) | 「Futures Brief」 제23-03호 발간<br>-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 |

### <국회의원실>

| 일자 | 제목 | 주최 | 장소 |
|---|---|---|---|
| 2/20(월)<br>09:30 |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 윤창현 의원실,<br>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2/20(월)<br>14:00 | 건설산업 OSC활성화방안 토론회 | 엄태영 의원실 | 의원회관<br>9간담회실 |
| 2/21(화)<br>14:00 |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정책의 해법 : 노인주치의제 | 신현영 의원실 | 의원회관<br>1세미나실 |
| 2/22(수)<br>10:00 |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 유경준 의원실,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br>국가전략센터 |
| 2/22(수)<br>10:00 |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 홍영표·강득구·김교흥·<br>김민철·김병주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1세미나실 |

| 일자 | 제목 | 주최 | 장소 |
|---|---|---|---|
| 2/22(수)<br>14:00 |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토론회** | 김정호·서삼석 의원실,<br>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등 | 의원회관<br>8간담회실 |
| 2/23(목)<br>14:00 |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창립기념식** | 양향자 의원실 | 의원회관<br>대회의실 |
| 2/23(목)<br>14:00 |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 | 김성원·윤한홍 의원실 | 의원회관<br>1세미나실 |
| 2/23(목)<br>15:00 | **제3회 과학기술강국포럼 토론회** | 조승래·김영식 의원실,<br>과학기술강국포럼 | 국회도서관<br>강당 |
| 2/24(금)<br>14:30 |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 | 변재일·김영식 의원실,<br>미디어미래연구소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